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보운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·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가함(안 제5조제3항제8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